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476호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6년 9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최근 국내·외 이슈가 되고 있는 노닐페놀류(NP, NPEO)를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신설하고, 리튬이차전지가 포함되는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 가죽제품의사고예방을 위해 전기적 안전요건을 신설하여 안전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 어린이용 가죽제품(부속서 1), 아동용 섬유제품(부속서 15)
 - ㅇ 리튬이차전지가 포함되는 섬유, 가죽제품의 전기적 안전요건 추가



- 관련 제품의 국내 제품사고조사연구 보고서 및 해외 사고사례 등을 고려하여 리튬이차전지가 포함되는 섬유, 가죽제품의 전기적 안전 요건 및 주의경고사항 신설
- □ 아동용 섬유제품(부속서 15)
 -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노닐페놀류(NP, NPEO) 추가
 - 해당 물질의 국내 규제(환경부)* 및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안전기준 등을 반영하여 아동용 섬유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관련 항목 신설(NP, NPEO 총 함량 100 mg/kg 이하)
 -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환경부 공고 제2016-446호

3.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 2016. 11. 8.(화)
-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취 체	게 검 (AL)	ਸੀ ਹ
현 행 어린이용 가죽제품	개 정 (안) 어린이용 가죽제품	비고
(Leather products for children)	(Leather products for children)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아동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아동	
	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3. 용어의 정의"에 따른 제품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다되고 있는 급기는 기용배용해서 제되근다.		
2. 관련표준	2. 인용표준 다음의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	내용 추가
	됨으로서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	
	용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G 3116 구두	KS G 3116 구두	
KS G 3405 구두용 구두골	KS G 3405 구두용 구두골	
KS K 0733 섬유 및 가죽 제품의 PCP 함유량 측정 방	KS K 0733 섬유 및 가죽 제품의 PCP 함유량 측정 방	
법	법	
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	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	
KS K 0737 섬유 제품의 유기 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	KS K 0737 섬유 제품의 유기 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	
험 방법	험 방법	
KS K 0941 유아동복의 안전성 - 유아동복에 사용하	<u>〈삭 제〉</u>	표준 삭제
는 코드 및 조임끈의 안전 요구 성능		
KS M 6681 신발의 치수체계	KS M 6681 신발의 치수체계	
KS M ISO 9407 신발의 치수-치수분류와 표식의 몬도	KS M ISO 9407 신발의 치수-치수분류와 표식의 몬도	
포인트 시스템	포인트 시스템	
KS M ISO 17186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피막 두께	KS M ISO 17186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피막 두께	
측정	측정	
ISO 17131 Leather-Identification of leather with	ISO 17131 Leather-Identification of leather with	
microscopy	microscopy	
<u>〈신 설〉</u>	ISO/TS 16186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DMFu 표준 추가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Test method to quantitatively determine	
	dimethyl fumarate (DMFU) in footwear materials	
KS M ISO 4044 가죽-화학시험 시료의 준비	KS M ISO 4044 가죽-화학시험 시료의 준비	
KS K ISO 14184-1 텍스타일-포름알데히드 측정-제1	<u>〈삭 제〉</u>	표준 삭제
부:유리 및 가수분해 폼알데하이드(증류수 추출법)		
KS M ISO 17075 가죽 - 화학적 시험 - 6가 크로뮴	KS M ISO 17075 가죽 - 화학적 시험 - 6가 크로뮴	
함량의 측정방법	함량의 측정방법	
	KS M ISO 17226 가죽 - 화학적 시험 - 폼알데하이드	
함량 측정	함량 측정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06 완구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06 완구	\ \ \ \ \ \ \ \ \ \ \ \ \ \ \ \ \ \ \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01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01 유아용 섬유제품	esting 17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국	1, 20, VIV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국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Lesting 15/10/2 (10/2)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no rest

KS K ISO 6330 텍스타일-섬유 시험에 대한 가정세탁 KS K ISO 6330 텍스타일-섬유 시험에 대한 가정세탁 과 건조과정

1부:원단 및 의류의 클리닝성(deanability) 평가방법

EN 14682 Safety of children's clothing-Cords and EN 14682 drawstrings on children's clothing-Specifications

ISO 14184-1 Textiles — Determination of formaldehyde <삭 제> Part 1: Free and hydrolized formaldehyde (water extraction method)

3. 용어의 정의

3.1 채료의 종류"라 함은 가죽제품을 구성하고 있는│3.1 제품의 표시사항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품질│표시사항에 사용 재료의 명칭을 말한다.

혁), 천연모피제품(모피) 원단이 표면 가죽면적 비율의 다. 60 %이상인 제품을 말한다.

3.2.1 천연가죽(Natural Leather)"이라 함은 동물의 껍질 을 벗겨 부패를 막기 위한 무두질 등의 공정을 거친 고 유의 섬유질 구조를 지닌 하이드(hide) 또는 스킨(skin)을 말한다. 천연가죽은 무두질 전 또는 후에 표피층을 포 함하는 상층부와 망상층의 하층부를 분리하여 만든 은 면혁(銀面革. grain)과 은면혁이 분할되고 떨어져 나온 하층부분인 상혁(床革. split)으로 분류하는데 모두 천연 가죽에 포함된다.

주 1. 하이드는 몸집이 크고 가죽이 두꺼운 동물(말, 소 등)의 원피, 스킨은 몸집이 작은 동물(송아지, 돼지, 양 뱀 등)의 원피를 말한다.

2. 무두질을 거친 하이드 또는 스킨이 지니는 원래의 섬유질 구조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해체하여 섬유 상 입자, 작은 조각 또는 파우더 등으로 만든 후에 접 착제 등으로 시트 형태로 만든 것은 천연가죽에 해당하 지 않는다.

3. 색상의 구현 또는 방수의 목적으로 가죽 표면에 수 지를 코팅(도포), 라미네이팅을 했을 경우 그 두께가 0.15 mm 미만이어야 한다.

3.2.1.1 은면혁(Grain leather)"이라 함은 원피 중에 털 이 붙어 있는 표피층을 포함하는 상층부 부분을 말한 다.

3.2.1.2 창혁(Split leather)"이라 함은 가죽에서 은면을 분리한 표피층의 하부부분인 살이 붙어있는 육면층 (Flesh split)을 말하고, 필요에 따라 세 층으로 분리할 수도 있는데 가운데 층(속가죽, Middle split)도 상혁에 포함된다.

3.2.2 힌조가죽"이라 함은 천연가죽을 대체하기 위하여 화학적으로 합성하거나 천연가죽에 일정수준 이상의 물 리적·화학적 처리를 한 것으로, 원료 및 처리공정에

과 건조과정

KS K ISO 3175-1 텍스타일-드라이클리닝 및 마무리-제 KS K ISO 3175-1 텍스타일-드라이클리닝 및 마무리-제 1부:원단 및 의류의 클리닝성(cleanability) 평가방법

> Safety of children's clothing-Cords and drawstrings on children's clothing-Specifications

표준 삭제

3. 용어의 정의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 되는 용어의 정의를 **3.2** 카죽제품"이라 함은 천연가죽(피혁) 및 인조가죽(피<mark>기준 부속서 3 가죽제품의 3.1항(3.1.1 ∼ 3.1.8)에 따른</mark>기주제품에 링크

따라 코팅가죽, 라미네이팅가죽, 재조합가죽, 합성가죽 으로 분류한다.

3.2.2.1 코팅가죽(Coated Leather)"이라 함은 천연가죽 표면에 각종 안료나 바인더 및 합성수지를 분무(Spray) 덧칠(Padding), 롤 코팅(Roll coating) 등의 방법으로 코팅 한 것으로, 코팅 두께는 0.15 mm 이상이고 전체가죽 두 께의 1/3 미만이어야 한다.

주 1. 코팅 두께의 측정은 KS M ISO 17186을 따른다.

3.2.2.2 라미네이팅가죽(Laminated Leather)"이라 함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천연가죽 층에 한 개 이상의 특수합성필름 또는 다른 물질 층이 접착제로 부착 또는 접착된 것으로, 가죽 층 이외의 물질의 두께는 0.15 mm 이상이고 전체 두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3.2.2.3 채조합가죽(Recombiant Leather)"이라 함은 무 두질한 가죽을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섬유나 작 은 조각 또는 파우더의 형태로 해체시킨 후, 다른 물질 과 혼합하여 시트나 폼 형태로 만든 가죽을 의미한다 본딩가죽, 그라인딩가죽, 분쇄가죽 등이 해당된다.

3.2.2.4 합성가죽(Synthetic Leather)"이라 함은 직물, 편 물, 부직포 등의 기포에 수지를 함침 또는 코팅하여 표 면에 형압축 등의 가공을 하여 만든 천연가죽의 대체품 을 의미한다.

3.2.3 천연모피(Naturla Fur)"라 함은 동물의 모피로 만 든 원단(밍크, 여우, 토끼, 너구리, 친칠라 등의 모피를 포함한 동물 모피)을 의미한다.

3.3 취급상 주의사항"이라 함은 드라이클리닝, 손질방 법, 보존방법 등의 취급 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가죽제 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3.4 유아용 가죽제품"이라 함은 36 개월 미만의 영 · **3.2.1 유아용 가죽제품"**이라 함은 36 개월 미만의 류에 따른다.

3.5 어린이용 가죽제품"이라 함은 36개월 이상 만 13|**3.2.2 어린이용 가죽제품"**이라 함은 36개월 이상 만 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 용 섬유제품 3.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품 3.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4. 안전요건

4.1 일반구조

5.1.1.1에 따라 시험시 통과되는 작은부품이 부착된 경|품에 5.1.1.1에 따라 시험시 통과되는 작은부품이 부착

3.2 안전요건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유아용 의류 및 가죽제품을 의미하며, 세부구분은 **안전** 영·유아용 의류 및 가죽제품을 의미하며, 세부구분은 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01 유아용 섬유제품 3.세부분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01 유아용 섬유제품 3.세 부분류에 따른다.

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가죽제품으로 내의류, 중|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mark>가죽제품을</mark> 말하며, 세|종류 구분 삭제에 의류, 외의류, 침구류, 가방 등을 말하며, 세부구분은 **공│**부구분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따른 내용 수정

4. 안전요건

4.1 일반구조

4.1.1 부착강도 (5.1.1 참조) 유아용 가죽제품에 **4.1.1 <mark>작은부품 부착강도 (5.1.1 참조)** 유아용 가죽제 항목명 수정</mark> 우에는 5.1.1.2에 따른 인장시험에서 탈락되지 않아야 된 경우에는 5.1.1.2에 따른 인장시험에서 탈락되지 않 한다. 다만, 인장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1.1.3에 따 아야 한다. 다만, 인장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1.1.3 되지 않아야 한다. 작은부품은 기능유무에 상관없이 모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작은부품은 기능유무에 상관없이 모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작은부품은 기능유무에 상관없이 모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작은부품은 기능유무에 상관없는 보다 보다 되었다면 보다 되었다

털 등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전기 또는 전자부품의 기능 자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전기 또는 전자부품의 기능 자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르되 대상 연령은 만 13세 이하로 한다.

품전체를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丑 1

유해물질		허 용 치 (이하)		시험
		유아용	아동용	방법
폼알대	데하이드(mg/kg)	20	75	5.2.1
염소화페	놀류(PCP) ¹⁾²⁾ (mg/kg)	0.5	5.0	5.2.2
6가	크로뮴 ²⁾ (mg/kg)	0.5	3.0	5.2.3
다이메틸	푸마레이트 ²⁾ (mg/kg)	(D.1	5.2.4
아를	실아민 ³⁾ (mg/kg)		30	5.2.5
유해원소	총 납(Pb) ⁴⁾ (mg/kg)	3	300	
함유량	총 카드뮴(Cd) ⁵⁾ (mg/kg)		75	5.2.6
유기주석	DBT (dibutyltin) (mg/kg)	1.0	_	5.2.7
화합물 ⁶⁾	TBT (tributyltin) (mg/kg)	0.5	1.0	5.2.7
프탈레이 트계 함유량 ⁷⁾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 핵실프탈레이트)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 프탈레이트)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 프탈레이트) DINP(Diisononyl phthalate, 다이이소 노닐프탈레이트) DIDP(Diisodecyl phthalate, 다이이소 데실프탈레이트)		0.1 %	5.2.8

팽글, 핫픽스 등을 말하며, 섬유, 실, 고무줄 및 끈, 잔│즈, 스팽글, 핫픽스 등을 말하며, 섬유, 실, 고무줄 및 끈. 잔털 등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4.1.2 자석 또는 자석부품 (5.1.2 참조) 유아용 가죽<mark>|4.1.2 자석 또는 자석부품 (5.1.2 참조)</mark> 유아용 가죽 제품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에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제품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에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한 자석이나 자석부품이**│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한 자석이나 자석부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용 공산품에 포함된 자석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용 공산품에 포함된 자석 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4.1.3 코드 및 조임끈 (5.1.3 참조) 유아용 가죽제품|4.1.3 코드 및 조임끈 (5.1.3 참조) 유아용 가죽제품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EN 1468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EN 14682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드 및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 EN 14682에 적합하여 코드 및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 EN 14682에 적합하여 야 한다. 제품의 연령 구분 및 정의는 EN 14682에 따│야 한다. 제품의 연령 구분 및 정의는 EN 14682에 따 르되 대상 연령은 만 13세 이하로 한다.

4.2 유해물질 안전요건 가죽제품의 유해성분의 기준 **4.2 유해물질 안전요건** 가죽제품의 유해성분의 기준 함유량은 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 1]에 적합│함유량은 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 1]에 적합 하여야 한다. 섬유소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하여야 한다. 섬유소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 대상연령에 따라 **안전확인 유아용 섬유제품**과 **공급자**대상연령에 따라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mark>|적합성확인 아동용 섬유제품</mark>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mark>섬유제품과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mark> 적합하여야 한다. 신발류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범<mark>동용 섬유제품의</mark>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 위는 갑피, 안감, 깔창에 한한다.(단, 유아용일 경우 제│다. 신발류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범위는 갑피, 안 감, 깔창에 한한다.(단, 유아용일 경우 제품전체를 적용 범위에 포함한다)

[표 1] 유해물질 안전요건

<u>유해물질명</u>		허 용 치		
		유아용	<u>어린이용</u>	
<u>폼알데하이드¹⁾(mg/kg)</u>		20 이하	<u>75 이하</u>	
염소화되	제놀류(PCP) ¹⁾²⁾ (mg/kg)	0.5 이하	5.0 이하	
<u>6</u> 7	├크로뮴 ¹⁾ (mg/kg)	3.0 이하	3.0 이하	
다이메	틸푸마레이트 ¹⁾ (mg/kg)	<u>0.1</u>	0.1 이하	
<u> </u>	릴아민 ¹⁾³⁾ (mg/kg)	<u>각각 (</u>	30 이하	
유해원소	총 납(Pb) ⁴⁾ (mg/kg)	300	이하	
함유량	총 카드뮴(Cd) ⁵⁾ (mg/kg)	<u>75</u>	이하	
유기주석	DBT (dibutyltin) (mg/kg)	1.0 이하	_	
화합물 ⁶⁾	TBT (tributyItin) (mg/kg)	0.5 이하	<u>1.0 이하</u>	
<u>프</u> 탈레이트계 <u>가소제 총</u> 함유량 ⁷¹ (%)	DEHP(Diethylhexylphthalate, 다이에탈핵실프탈레이트)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BBP(Butyl benzyl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DINP(Diison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널프탈레이트) DIDP(Diisodec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D N O P(Di-n-octylphthalate,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u>0.1</u>	<u>이하</u>	
니켈	용출량 ⁸⁾ (µg/cm²/week)	0.5	OBR NA	

6가 크로뮴 허용치 수정(KS M ISO 17075의 적용범위에 따라 가죽에 함유된 6가 크로뮴 양이 3 mg/kg 이하일 경우에 적용토록 되어 있음)

DNOP (Di –n –octyl		
phthalate, 다이엔옥		
틸프탈레이트)		
니켈 (ɹɹg/cm²/week)	0.5	5.2.9

비고

〈신 설〉

- 1. PCP[pentachlorophenol]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 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
- 2. 무두질, 살균상충처리 등을 거치지 않는 합성가죽은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및 PCP검출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3. 안료 또는 염료 등을 사용하여 색이 발현된 경우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4에 따른다.
- 4. 금속, 고무,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되거나 코팅, 프린팅된 경우 적용한다. 단,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이며, 전기·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5. 금속, 고무,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되거나 코팅, 프린팅된 경우 적용한다.
- 6. 코팅, 프린팅이 되어있는 경우만 적용한다(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날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되지 않는다).
- 7.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의 경우 DEHP, DBP, BBP를 적용하고,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제품은 DEHP, DBP, BBP, DINP, DIDP, DNOP를 적용하며, 합성수지제, 섬유 및 가죽제에 코팅한 경우 적용함. 또한, 어린이의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닌 어린이 제품 중 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총 합이 0.1 %를 초과한 제품에는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이라는 경고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8. 제품을 구성하는 가죽 부위 중 제품면적 대비 5%이하인 부분은 제외하며, 면적계산이 불가한 부속의 경우 전체 중 량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신 설〉

〈신 설〉

비고

- 1. 가죽 또는 모피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 2. PCP[pentachlorophenol]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 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

〈삭 제〉

- 3. <u>염색한 가죽부분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u>, KS K 0739에 따른다.
- 4. 금속 기질, 고분자 기질, 페인트 및 유사코팅, 기타 재료 (목재 등)부분에 적용하며,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기준 치를 90 mg/kg 이하로 한다. 단, 전기·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5. 금속 기질, 고분자 기질, 페인트 및 유사코팅, 기타 재료 (목재 등)부분에 적용한다.
- 6. 가죽 원단에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
- 7.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의 경우 DEHP, DBP, BBP를 적용하고,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제품은 DEHP, DBP, BBP, DINP, DIDP, DNOP를 적용하며, 가족 원단에 합성수지(합성고무 포함) 소재로 코팅 또는 프린팅등의 가공 처리를 한 경우 및 합성수지(합성고무 포함) 소재의 부자재에만 적용하며, 단, 금속 및 고분자 기질 위에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어린이의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닌 어린이제품 중 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총 합이 0.1 %를 초과한 제품에는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이라는 경고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8.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상시 접촉하는 금속에 한하여 적용한다. 표면이 도금형태가 아닌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제외한다.
- 9. 제품을 구성하는 가죽 부위 중 제품 겉감(신발의 경우 갑피)의 면적 대비 5% 이하인 부분은 제외하며, 면적계산이 불가한 부속의 경우 전체 중량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 할 수 있다

4.3 전기적 안전요건

어린이용 가죽제품의 전기적 안전요건은 안전 ·품질표시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4.3 전기적 안전요건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4.4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한 공산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유해물질이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제3자 시험 본 사기관의 시험, 외국기관의 시험성적서, 원자자 등급압

시험항목별 적용 범위 명확화

전점 안전과 취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석합여부 확인 내용 통가 기가 사용하여 기가 기가

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 인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시험방법 5.1 일반구조 5. 시험방법 5.1.1 부착강도 항목명 수정 5.1 일반구조 5.1.1.1 작은부품 시험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06 5.1.1 작은부품 부착강도 완구 **4.4를** 따른다. 5.1.1.1 작은부품 시험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06시험방법 항목번호 5.1.1.2 작은부품 인장시험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완구 5.2를 따른다. 06 완구 5.24.6을 따른다(부착강도 기준치는 50 N ± 2 N). **5.1.1.2 작은부품 인장시험**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1.1.3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시험** 인장시험이 불│06 완구 5.24.6을 따른다(부착강도 기준치는 50 N ± 2 N). 가능한 경우에는 KS K ISO 6330(A세탁법)에 따라 세│5.1.1.3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시험 인장시험이 불 탁시험을 진행하며 이 때 개별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 가능한 경우에는 KS K ISO 6330(A세탁법)에 따라 세 의 세탁온도 및 방법을 참고하며, 세탁온도 표시가 없│탁시험을 진행하며 이 때 개별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 는 경우는 5A 기준방법으로 세탁시험을 진행한다. 물세│의 세탁온도 및 방법을 참고하며, 세탁온도 표시가 없 탁이 불가능한 드라이클리닝 제품인 경우에는 KS KI는 경우는 5A 기준방법으로 세탁시험을 진행한다. 물세 ISO 3175-1로 시험을 진행한다. 탁이 불가능한 드라이클리닝 제품인 경우에는 KS K **5.1.2 자석 또는 자석부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ISO 3175-1로 시험을 진행한다. 항목명 수정 에 따른다. 5.1.2 <mark>자석과 자석부품</mark>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 5.1.3 코드 및 조임끈 EN 14682에 따른다. 른다. 5.1.3 코드 및 조임끈 EN 14682에 따른다. 5.2 유해물질 안전요건 5.2.1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KS K ISO 14184-1 또는 5.2 유해물질 안전요건 표준 삭제 ISO 14184-1, KS M ISO 17226에 따른다. |5.2.1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KS M ISO 17226**에 따른 5.2.2 염소화페놀류 함유량 KS K 0733에 따른다. 다 |5.2.3 6가 크로뮴 함유량 KS M 6902, KS M ISO|5.2.2 염소화페놀류 함유량 KS K 0733에 따른다. 17075에 따른다. 5.2.3 6가 크로뮴 함유량 KS M ISO 17075에 따른 농축액 정제괴정이 5.2.4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함유량 안전확인 안전기준다. 포함되어 있어 현재 부속서 01 유아용섬유제품에 따른다. 5.2.4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함유량 ISO/TS 16186에 때 방법보다 정확한 른다. 결과도출 가능 시험방법 수정 5.2.5 아릴아민 함유량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01 5.2.5 아릴아민 함유량 KS K 0147, KS K 0739에 따 유아용섬유제품에 따른다. 른다. |5.2.6 **유해원소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mark>|5.2.6 유해원소 함유량</mark>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 른다. 시험방법 수정 |5.2.7 유기주석화합물 함유량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5.2.7 유기주석화합물 함유량 KS K 0737에 따른다. 서 01 유아용섬유제품에 따른다. 5.2.8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 5.2.8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에 따른다. 안전기준에 따른다. 5.2.9 **니켈 용출량**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2.9 **니켈 용출량**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 장신구에 따른다. 11 어린이용 장신구에 따른다. 6.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 **6.1 개별 제품** 개별제품에는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 6.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 닝을 하더라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6.1 개별 제품** 개별제품에는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 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표 2]에 따라 표시사 닝을 하더라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 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표 2]에 따라 표시사 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자'

품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품 문의처', 소비자생함 실'제조자명 (국산품에 한함)', 수입자명(수입물에 생한

[표 2] 개별제품 표시사항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한 표시

- 1. 품명
- 2. 재료의 종류
- 3. 제조자명
- 4.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 5. 제조국명
- 6. 제조연월
- 7. 주소 및 전화번호
- 8. 치수⁽¹⁾
- 9. 취급상 주의사항

주 1.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6.2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 개별제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6.2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 단위 표면에 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

6.3 가죽 및 모피 의류의 표시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 6.3** 가죽 및 모피 의류의 표시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의│<mark>•품질표시 부속서1 가정용 섬유제품의</mark> 표시기준에 표시는 섬유 부분에 한하며, 가죽 및 모피 원단의 표시|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의 와 사용상 주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가죽제품 표시는 섬유 부분에 한하며, 가죽 및 모피 원단의 표시 의 표시 규정에 따른다.

7. 세부 표시방법

7.1 품명

7.1.1 품명은 가죽제품'으로 표시한다.

7.2 재료의 종류(조성 표시)

7.2.1 재료의 종류는 겉감 및 안감(의류에 한함)에 대하<mark>시방법에 따른다.</mark> 여 모두 표시하고, 신발류는 갑피, 창으로 구분하여 표 시한다. 서로 다른 가죽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섬유 와 혼용된 가죽제품의 경우 사용부분을 분리하여 그 사 용부분을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각 사용부분별 재료의 종류를 병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가죽 및 모피의류의 안감 또는 제품의 일부가 섬유재질일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품질표시 부속** 서1의 가정용섬유제품에 따라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 률을 표시한다.

7.2.2 천연가죽은 [표 3]과 같이 천연가죽(동물명)'으로 표시한다. 동물명은 동물종의 통칭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다.

[표 3] 천연가죽의 동물종을 표시하는 용어 주 1. 산양가죽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함)' 또는 판매자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표 2] 개별제품 표시사항

- <u>1. 품명</u>
- 2. 재료의 종류
- 3. 제조자명
- 4.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 5. 제조국명
- 6. 제조연월
- 7. 주소 및 전화번호
- 8. 치수(권장)
- 9. 취급상 주의사항

심히 해할 수 있는 지갑류, 가방류, 벨트류, 신발류 등 개별제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은 6.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커 심히 해할 수 있는 지갑류, 가방류, 벨트류, 신발류 등 등을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전달될│은 6.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커 때까지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등을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전달될 동일 품명으로 2개 이상 (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때까지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포장|동일 품명으로 2개 이상 (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 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포장 단위 표면에 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

• 품질표시 부속서1의 가정용섬유제품의 표시기준에 하고 <u>「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u> 와 사용상 주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가죽제품 의 표시 규정에 따른다.

7. 세부 표시방법

세부 표시방법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3 가죽제품의 7. 세부 표

세부 표시방법을 가죽제품에 따르 도록 개정

천연가죽의 동물종	표시명	
소의 가죽	천연가죽(소)	
양의 가죽	천연가죽(양)	
염소의 가죽	천연가죽(염소) ⁽¹⁾	
사슴의 가죽	천연가죽(사슴)	
돼지의 가죽	천연가죽(돼지)	
말의 가죽	천연가죽(말)	
개의 가죽	천연가죽(개)	
뱀의 가죽	천연가죽(뱀)	
위의 각항에 규정된 이외의 동물종 가죽	동물종의 통칭을 나타내는 용어	

7.2.3 3.2.2.1와 3.2.2.2에 따라 코팅가죽, 라미네이팅가 죽에 해당하는 경우 엔조가죽'으로 표시하거나 각 항목 에 맞게 표시하고, 코팅 또는 라미네이팅 재료의 성분 을 병기할 수 있다(예 : 인조가죽(폴리우레탄 코팅), 인 조가죽(폴리우레탄 라미네이팅) 또는 코팅가죽(폴리우레 탄 코팅), 라미네이팅가죽(폴리우레탄 라미네이팅) 등). 3.2.2.3에 따라 재조합가죽에 해당할 경우 연조가죽'으 로 표시하거나 재조합가죽'으로 표시하고, 재조합 방식 을 부기하거나(예 : 인조가죽(본딩가죽), 인조가죽(그라 인딩가죽), 인조가죽(분쇄가죽) 또는 재조합가죽(본딩가 죽), 재조합가죽(그라인딩가죽), 재조합가죽(분쇄가죽) 등), 가죽성분과 가죽 이외 성분의 혼용율을 조성이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예 : 인조가죽(가죽 60%, 기타 40%) 또는 재조합가죽(가죽 60 %, 기타 40%)). 3.1.4.4에 따라 합성가죽에 해당하는 경우 연조 가죽(합성가죽)'으로 표시하거나 합성가죽'으로 표시한 다.

7.2.4 천연모피는 '천연모피(동물명) 로 표시하고, 동물명은 동물종의 통칭을 나타내는 용어를 부기한다.(보기 : 천연모피(밍크), 천연모피(토끼), 천연모피(여우), 천연모피(너구리) 등).

7.3 치수

7.3.1 치수 표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품질표시 부속서1의 가정용섬유제품의** [별표9] 에 따른다.

7.3.2 치수표시 단위는 국제표준 단위(SI)로 표시하여야 한다.

7.4 제조국명

제조국은 제조자가 속한 국가를 말하며, 여러 제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을 부여한 자가 속한 국가 명을 쓰고, 국내에서 제조된 경우에는 한국산 등으로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기한다. 수입제품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기한다.

7.5 취급상 주의사항

CIRSCON RESIDENT NATION CIRSCON ASTRONOS DE CIRSCONOS DE

7.5.1 취급상 주의사항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 4]**의 사 항

취급상 주의사항

세탁(벤젠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물로 씻을 때에 가죽 및 모피의 색이 바래지거나 또는 가죽이 경화 할 우려가 있다는 것

겹쳐두지 않고 온도습도가 낮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장마철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가죽 및 모피의 때를 빼는 경우에는 가죽 및 모피의류 전 문용 클리너를 사용하고 특히 스웨이드 가죽은 고무지우 개로 때를 뺀 후 솔로 털 것

다림질은 저온에서 두꺼운 종이 또는 헝겊을 대고 해야 하며 증기 다리미는 사용하지 말 것

을 표시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품특성에 따라 취급상 주의사항 을 추가할 수 있다. 가죽 및 모피의류의 취급상 주의사 항은 별도 꼬리표를 사용할 수 있다

[표 4] 가죽제품의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

(1) 가죽 및 모피의류

(2) 가방 및 핸드백 가방 및 핸드백은 손질방법 및 보존방법인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취급상 주의사항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젖었을 때에는 직사일광 또는 불로 건조시키		
천연가죽	지 아니할 것		
선 한기 취	마른 수건이나 기타 부드러운 천으로 닦을 것		
	보존 시에는 온도나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할		
	것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인조가죽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		
	가 없다.		

(3) 신발

CRECON SECULOR OF 12 TO THE CONTROL OF THE CONTROL

	취급상 주의사항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젖었을 때에는 직사일광 또는 불로 건조시키
천연가죽	지 아니할 것
선 한기 측	솔로 잘 닦을 것
	보존 시에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할
	것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인조가죽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
	가 없다.

(4) 기타 가죽제품 기타 가죽제품은 제품에 필요한 사 항을 표시한다.

7.5.2 유아 또는 아동용 가죽제품에 **안전확인 완구 제** 2부.4.2시험 작은 부품시험에서 통과되는 작은 부품이 부착된 경우에는 [표 5]에 따라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 야 한다.

[표 5] 유아·아동용 가죽제품의 작은부품에 대한 주의 사항

추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

7.6 안전요건 적합 표시

안전요건에 적합함을 수요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표시사 항에 **기준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한 제** 품임"의 표시문구를 추가할 수 있다.

> CRSCORTOTION 121230M CRSCORTOTION CONTROL OF CONTROL OF

현 행	개 정 (안)	ŀ	비고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Textile Products for children)	(Textile Products for children)			
(rextile reducte for difficility	(Toxino i Toddoto for official)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3.용어의 정의 예 규정되어			
	있는 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			
	항 등에 대해 규정한다. 다만, 맞춤복은 공급자적합성확			
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지려그경 디오에 나타내는 그경이 이 기조에 이	2. 인용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u>표준 또는 기준은</u> 이	용어 :	수정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u>표준 또는 기준은</u>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			
KS K ISO 3071 텍스타일 - 수성 추출액의 pH 측정				
	KS K ISO 14184-1 텍스타일 포름알데히드 측정 -	-		
제1부 : 유리 및 가수분해 포름알데히드(증류수 추출법)		ᆒᅩ	ᅲᅎ	人して川
KS K 0734 폴리에스테르 섬유 제품 중의 아릴아민 함	<u>〈삭 제〉</u>	폐지 .	土亡	삭제
유량 측정방법				
KS K 0736 섬유제품의 알러지성 염료 함유량 시험방	KS K 0736 섬유제품의 알러지성 염료 함유량 시험방			
법	법			
KS K 0737 섬유 제품의 유기 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	KS K 0737 섬유 제품의 유기 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			
방법	방법		_	
〈신 설〉	KS K 0739 섬유제품 - 아조 염료로부터 생성되는 특정	관련 .	표준	주가
	방향족 아민의 분석 방법 - 제3부 : 특정 아조 염료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4-아미노아조벤젠 분석			
KS K ISO 3175-1 텍스타일-드라이클리닝 및 마무리-	KS K ISO 3175-1 텍스타일-드라이클리닝 및 마무리-			
제1부:원단 및 의류의 클리닝성 (cleanability) 평가방법	제1부:원단 및 의류의 클리닝성 (cleanability) 평가방법			
KS K ISO 6330 텍스타일-섬유 시험에 대한 가정세탁	KS K ISO 6330 텍스타일-섬유 시험에 대한 가정세탁			
과 건조과정	과 건조과정			
KS C IEC 전기전자제품-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	<u>〈삭 제〉</u>	표준	삭제	
뮴, 6가크로뮴, PBBs, PBDEs)의 함량 측정				
EN 14362-1 Textiles.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u>〈삭 제〉</u>	중복 .	표준	삭제
certain aromatic amines derived from azo colorants.				
Detection of the use of certain azo colorants accessible				
with and without extracting the fibres				
EN 14362-3 Textiles.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u>〈삭 제〉</u>	중복 :	표준	삭제
certain aromatic amines derived from azo colorants.				
Detection of the use of certain azo colorants, which				
may release 4-aminoazobenzene				
EN 14682 Safety of children's clothing-Cords and	EN 14682 Safety of children's dothing-Cords and	713		12
drawstrings on children's clothing-Specifications	drawstrings on children's clothing-Specifications	Zest,	OWY	7,78
ISO 3071 Textiles — Determination of pH of aqueous	<u>⟨⁴ 제⟩</u> , c, 9 ^t	हर्ने,	₩	<u>사제</u> `
extract	CIRE WE	_0. ×	~ (W)	_
ISO 14184-1 Textiles — Determination of formaldehyde	<u> </u>	중복,	£준	삭제

 Part 1: Free and hydrolized formaldehyde (water extraction) method)

〈신설〉

안전확인 부속서 01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확인 부속서 06 완구

〈신 설〉

〈신설〉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 ·품질표시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신 설〉

국민안전처고시 방염성능의 기준

3. 용어의 정의

3.1 하동용 섬유제품"이라 함은 36개월 이상 만 13세 **3.1** 하동용 섬유제품"이라 함은 36개월 이상 만 13세 외의류, 침구류 및 가방 등을 말한다.

는 제품으로서, 슈미즈, 드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mark>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에 따른다.</mark> 슬립류, 가터벨트류, 코르셋류(거들), 파니에, 브리프류 런닝류, 잠옷류, 양말류(타이즈, 스타킹 포함), 복대 등을 말한다.

3.1.2 중의류"라 함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 서, 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 조복, 체육복, 방한대,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가발 등을 말한다.(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형태의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한다)

3.1.3 회의류"라 함은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제품으로 서,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 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를 말하며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 연가죽 •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 등을 말한다.(재킷, 코트 형태의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한다). 3.1.4 침구류"라 함은 잠을 자는 데 이용하는 제품으로 서, 이불 및 요, 베개, 모포, 침낭, 커버, 시트, 해먹, 카 페트 등을 말한다.

국민안전처고시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안전요건

EN ISO 18254- Textiles - Method for the detection and 관련 표준 추가 determination of alkylphenolethoxylates (APEO)-Part1 Method using HPLC-MS

〈삭 제〉 〈삭 제〉 표준 삭제 표준 삭제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u>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어린이용 가죽제품</u> 관련 표준 추가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 부속서 정보 수정

안전 ·품질표시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국민안전처고시 방염성능의 기준

3. 용어의 정의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섬유제품으로 내의류, 중의류,|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섬유제품으로 <mark>피부 직접 접촉</mark>|종류구분 변경 제품, 피부 간접 접촉제품을 말하며, 제품 분류는 「품질 <mark>3.1.1</mark> 때의류"라 함은 지속적으로 피부에 직접 접촉하<mark>경영 및 공산품안전관</mark>리법J에 따른 안전·품질표시 기준│종류구분 변경

관련 표준 추가

(피부직접접촉. 피부간접접촉)

3.2 방염제품"이라 함은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3.2 방염제품"이라 함은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하며 방염제품이라 표시하였을 경우는 제조한 제품을 말하며 방염제품이라 표시하였을 경우는 국민안전처고시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안전요건

4.1 일반구조

4.1.1 코드 및 조임끈 (5.1.1 참조) EN 14682에서 규정 유행물질(인정유건 하고 있는 코드 및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에는 14682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품의 연령 구분 및 'EN 14682에 따르되 대상 연령은 만 13세 이하\♥

일반구조 인전요건을 EMNY 海色等 客邸

〈신 설〉

4.1.2 자석과 자석부품 (5.1.2 참조) 유아용 섬유제품 자석과 자석부품 에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안전요건 추가 해한 자석과 자석부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 용 공산품에 포함된 자석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전기 또는 전자부품의 기능 자 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1 유해물질 안전요건 각 구분별 섬유제품은 표 1의│**4.2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의 기준 함유량은 5.에**│가죽이나 모피가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1]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 사용된 부분 및 다. 가죽이나 모피 소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 신발의 적용범위 <u>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어린이용 가죽제품)</u>내용 추가 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신발류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범위는 갑피, 안감, 깔창에 한한 <u>다.</u>

표 1 유해물질 안전요건

[표 1] 유해물질 안전요건

제품명 유해물질명	아동용 섬유제품
폼알데하이드 (mg/kg)	75 이하
아릴아민 (mg/kg) ¹⁾	3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2	0.1이하
유기주석화합물 (mg/kg) ³⁾⁻ TBT (tributyltin)	1.0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⁴⁾	0.1이하
방염제 ⁵⁾	사용하지 말것
납(mg/kg) ⁶⁾	90이하
코드 및 조임끈 ⁷⁾	적합
알러지성 염료 ⁸⁾	사용하지 말것
рН	4.0 ~ 7.5
니켈(Ni)의 용출량	0.5μg/cm²/week이하

유해물질명	<u>허용치</u>	리에터푸테에어
4).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u>폼알데하이드¹⁾(mg/kg)</u>	75 이하	
아릴아민 ²⁾ (mg/kg)	<u>각각 30 이하</u>	따르도록 변경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³⁾ (%)	0.1 이하	알러지성 염료
프릴데이트게 가모세 중 임규랑 (%)	0.1 0101	기준치 설정
유기주석화합물4)	4.0.01-1	
(mg/kg) TBT (tributyltin)	1.0 이하	공통안전기준 중
방염제 ⁵⁾	사용하지 말것	카드뮴 추가
납(mg/kg) ⁶⁾	90 이하	유해물질 안전요건
<u>카드뮴⁶⁾(mg/kg)</u>	<u>75 이하</u>	에서 일반구조 안전
알러지성 염료 ⁷⁾ (mg/kg)	<u>각각 50 이하</u>	요건(코드 및 조임끈)
<u>pH¹⁾</u>	4.0 ~ 7.5	삭제
니켈(Ni)의 용출량 ⁸⁾ (ɹɹg/cm²/week)	<u>0.5 이하</u>	노닐페놀 추가 검토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 ^{1),11)} (mg/kg)	<u>100 이하</u>	

EU REACH 부속서 |XVII 100 mg/kg 이하)

적용범위 명확화

주1. 〈신 설〉

KS K 0734에 따른다.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표 2와 같다.

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용하다. 우는 프린팅에 해당 되지 않는다).

4. 피혁 및 모피 등 가죽 소재가 되어 있는 부분만 적 (삭 제) 용한다.

PentaBDE [Pentabromodiphenyl

주1. 섬유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염색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mark>2. 염색한 섬유부분에만</mark>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적용범위 명확화 0147. KS K 0739에 따른다.

|2. 코팅제, 고무,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사용한 경우만|<mark>3. 섬유 원단에 합성수지(합성고무 포함) 소재로 코팅 또</mark>|적용범위 명확화 는 프린팅 등의 가공 처리를 한 경우 및 합성수지(합성 고무 포함) 소재의 부자재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다 음 표 2와 같다. 단, 금속 및 고분자 기질 위에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3.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안료|<mark>4. 섬유 원단에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mark>|적용범위 명확화

|5. 대상물질은 TDBPP [tri(2,3-dibromopropyl) phosphate],|5. 대상물질은 TDBPP [tri(2,3-dibromopropyl) phosp<mark>haté</mark>] ethers], PentaBDE [Pentabromodiphenyl ethers].

OctaBDE [Octabromodiphenyl ethers]이고 방염가공처리된 OctaBDE [Octabromodiphenyl ethers]이고 방염가공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한다.

7. 코드 및 조임끈이 있는 제품은 EN 14682에 적합하여 <mark>〈삭 제〉</mark> 야 한다.

공 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 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10.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 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신 설〉

[표 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종류

	물 질 명	CAS No.
1	Di-(2-ethylhexyl)phthalate(DEHP)	117-81-7
2	Butylbenzyl phthalate(BBP)	85-68-7
3	Dibutyl phthalate(DBP)	84-74-2

〈신설〉

4.2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 전한 공산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한 공산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유해물질이 제품에 존재할 수 있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유해물질이 제품에 존재할 수 있 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총 인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코팅, 프린팅, 단추 등 부자재를 사용된 부분만 적용<mark>6. 금속 기질, 고분자 기질, 페인트 및 유사코팅, 기타</mark> 한다. 단 금속류의 경우는 기준치를 300 mg/kg이하로<mark>|재료(목재 등)부분에 적용하며, 섬유 원단에는 적용하지|</mark>적용범위 명확화 않는다. 단 금속기질의 경우에는 납 기준치를 300 mg/k g 이하로 한다.

8. 대상물질은 KS K 0736에 따르고 알러지 염료로 가 7. 대상물질은 KS K 0736에 따르며 조성섬유가 폴리에 스터, 나일론, 아크릴, 아세테이트 섬유로 구성된 섬유|적용범위 명확화 <u>부분에 한</u>하여 적용한다.

> 8.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상시접 촉하는 금속에 한하여 적용한다. 표면이 도금형태가 아닌 적용범위 명확화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제외한다.

9.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 부위 중 충전재 및 제품 면적 9.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 부위 중 충전재 및 제품 면적 대비 5% 이하인 부분은 제외하며,면적계산이 불가한 대비 5 % 이하인 부분은 제외하며,면적계산이 불가한 끈 이나 코드 등 섬유제 부속의 경우 전체 중량의 1%|끈이나 코드 등 섬유제 부속의 경우 전체 중량의 1 %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u>단,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u> 제품 착용시 신체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적용대상으로 인정한다.

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제 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1. NP, NPEO 및 가죽(모피)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은 18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시 행한다.

표 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종류

	물 질 명	CAS No.
1	Di-(2-ethylhexyl)phthalate(DEHP)	117-81-7
2	Butylbenzyl phthalate(BBP)	85-68-7
3	Dibutyl phthalate(DBP)	84-74-2

4.2 전기적 안전요건

아동용 섬유제품의 전기적 안전요건은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4.3 전기적 안전요건 항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4.3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제3자 시험·검|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제3자 시험·검 사기관의 시험, 외국기관의 시험성적서, 원자재 공급업|사기관의 시험, 외국기관의 시험성적서, 원자재 공급업 인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시험방법

〈신 설〉

5.1 pH KS K ISO 3071 또는 ISO 3071 에 따른다.

ISO 14184-1에 따른다.

5.3 아릴아민 함유량 KS K 0147, KS K 0734, EN 5.2.3 아릴아민 함유량 KS K 0147, KS K 0739에 14362-1. EN 14362-3에 따른다.

따른다.

|5.5 유기주석화합물 함유량 KS K 0737에 따른다. │**5.2.5 유기주석화합물 함유량** KS K 0737에 따른

5.6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함유량 안전확인 부속세다.

01 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B에 따른다.

5.7 방염제

5.7.1 PBB, PentaBDE, OctaBDE의 시험은 KS C IEC 5.2.6 방염제 62321에 따른다.

5.7.2 TDBPP(TRIS) 안전확인 부속서 이 유아용 섬유 62321에 따른다. 제품 부속서 A에 따른다.

5.8 납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신 설〉

5.9 코드 및 조임끈 EN 14682에 따른다.

5.10 알러지성 염료 KS K 0736에 따른다.

5.11 니켈의 용출량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 5.<mark>2.10</mark> 알러지성 염료 KS K 0736에 따른다. 서 11 어린이 장신구에 따른다.

〈신 설〉

6. 표시사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 6. 표시사항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고시」중 안전 ㆍ품 따르고,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시험방법

5.1 일반구조

5.1.1 코드 및 조임끈 EN 14682에 따른다.

5.1.2 자석과 자석부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 방법 추가

른다.

5.2 유해물질 안전요건

5.2.1 pH KS K ISO 3071에 따른다.

5.2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KS K ISO 14184⊣ 또는 **5.2.2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KS K ISO 14184⊣에** 중복 표준 삭제 중복 표준 삭제

따른다.

따른다.

통안전기준"에 따른다.

〈삭 제〉

5.2.6.1 PentaBDE, OctaBDE의 시험은 KS C IEC

5.2.6.2 TDBPP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양탄자) 부속서

A TDBPP 정량방법에 따른다.

5.2.7 총 납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2.8 총 카드뮴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2.9 코드 및 조임끈 EN 14682에 따른다.

5.2.11 니켈 용출량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에 따른다.

5.2.12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 안전확인 안전기

준 1 (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 A에 따른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 <mark>질표시 부속서 1의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에</mark><mark>질표시 기준 부속서 1</mark>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 에 따르고,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사용연령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중복 표준 삭제 및 신설 표준 추가 항목명 수정

일반구조 시험

자석과 자석부품

시험방법 추가

다에티푸메이트 어림이용 기죽제품에

따르므로 삭제

방염제 삭제

항목명 수정 카드뮴 추가

노닐페놀 시험방법 추가

MAN CLESTING 127.123 OF 127. MAN COLOR COL